

#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0
----------	-----

제출연월일 : 2022. 4. 12.

제출자 : 남양주시장

### 1. 제안이유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영유아 가정에 대한 놀이체험시설 이용료 추가 경감을 통하여 부모의 경제·심리적 양육부담을 덜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응에 이바지하기 위함
- 놀이체험시설의 설치 등 관련 내용을 실제와 일치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관리부서 이관 등에 따른 놀이체험시설 현행화 : 안 별표 1내지4
  - ‘아이맘놀이터’, ‘코코몽 팜빌리지’ 삭제
- 이용료의 감면 기준 일부 수정 및 신설 : 안 별표 4
  - (수정) 감면율 50% :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두 자녀를 둔 가족
  - (신설) 감면율 100% : 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조문 정비 : 안 제2조제3호, 안 제10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비용추계서 : 붙임1

5. 입법예고 결과 : 붙임2

6. 성별영향평가 결과 : 붙임3

7. 부패영향평가 결과 : 붙임4

8. 규제심사 결과 : 붙임 5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하의”를 “이하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기념일 등”을 “기념일 및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보육정책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보육정책과장 박 미 경
	팀장 직위·성명	보육사업팀장 이향아
	담당자 성명·전화	이기순 (4443)

[별표 1]

놀이체험시설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시설명	위치	비고
까꿍놀이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어린이비전센터 1층
놀자람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259	화도체육문화센터 내
도르르	남양주시 늘을2로 67(호평동)	호평체육문화센터 내
북(Book) 놀이터	남양주시 별내3로 308(별내동)	스마트시티통합센터 1층
아이꿈놀이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43	와부도서관 2층

[별표 2]

휴관일 및 운영시간 기준(제8조 관련)

시설명	휴관일	운영시간	비고
까꿍놀이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10:00 ~ 18:00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함
놀자람			
도르르			
북(Book) 놀이터			
아이꿈놀이터	매주 둘째/넷째 금요일, 1월 1일, 설날·추석연휴 기간(대체공휴일 포함)		※ 와부도서관 정기 휴관일에 따름

[별표 3]

**이용료의 징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시설명	구분	이용자	이용료	비 고
까꿍 놀이터	36개월 이하		4,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li> <li>내부 추가프로그램 운영 시 교재비, 재료비 별도</li> </ul>
	동반보호자		무료	
놀자람	유아존	24개월 이상 ~만5세 이하	4,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li> </ul>
		24개월 미만	무료	
		동반 보호자		
	영아존	36개월 이하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 별도 부과(2,000원~10,000원)</li> </ul>
	아뜰리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 별도 부과(2,000원~10,000원)</li> </ul>
도르르	신체놀이 영역	24개월 이상 ~만5세 이하	4,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li> </ul>
		24개월 미만	무료	
		동반 보호자		
	아뜰리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 별도부과(2,000원~10,000원)</li> </ul>
	공 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람료 및 프로그램 참가비 별도부과(3,000원~10,000원)</li> </ul>
북(Book) 놀이터	24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4,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li> <li>내부 추가프로그램 운영 시 교재비, 재료비 별도</li> </ul>
	24개월 미만		무료	
	동반 보호자			
아이꿈 놀이터	만5세 이하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li> <li>내부 추가프로그램 운영 시 교재비, 재료비 별도</li> </ul>

[별표 4]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시설명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
까꿍놀이터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li> <li>·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li>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 두 자녀를 둔 가족</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 5인(24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이상의 단체</li> </ul>
놀자람	유아존		
도르르	신체 놀이 영역		
북(Book) 놀이터			
모든 놀이체험시설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li> </ul>

※ 시설별 중복 감면사유 발생 시 한 가지만 적용함

※ 단체 방문 인원은 동반보호자를 제외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 인원으로 적용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 5세 이상 만 12세 <u>이하의</u> 사람을 말한다.</p> <p>4. ~ 7. (생략)</p> <p>제10조(이용료) ① 시장은 놀이체험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놀이체험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나 <u>기념일</u>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이하인</u> ----- -----.</p> <p>4. ~ 7.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이용료) ① ----- ----- ----- -----. ----- <u>기념일 및 그 밖에</u> ----- ----- -----.</p> <p>② (현행과 같음)</p>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예산상 조치 수반 요인

- 본 조례안의 예산상 조치 수반 요인으로는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놀이체험시설의 이용료를 추가적으로 경감(면제)하는 사항이 해당됨  
(세입감소) : 제10조제2항 [별표 4]
-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세입(입장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그 금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 개정사항

기존	변경(개선)(안)
두자녀 이상을 둔 가족: 이용료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자녀를 둔 가족: 이용료 50% 감면</li> <li>◦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이용료 면제</li> </ul>

- 예산추계

과목	개정전 세입(연수입)		개정시 감소예상액
관)경상적 세외수입 항)사용료수입 목)입장료수입	○'19년도 기준 (정상운영)	86,567천원	△약 10%(예상) ※ 연평균 1억원 미만
	○'21년도 기준 (코로나19 등 인원제한)	53,091천원	

### 4. 작성자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 붙임2 입법예고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보육정책과-4970호(2022.3.2.)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3. 3.(목) ~ 3. 23.(수) /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향후 추진계획

- 2022. 4. 5. ~ 4. 29. :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상정, 의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이기순	보육사업팀장	이향아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복지행정과장	대결 2022. 3. 24. 유희윤
복지국장	전결						
협조자	주무관	기타	법무행정팀장	이은경	법무담당관	양기영	
시행	보육정책과-7871			접수			
우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다산동)			복지국 보육정책과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443	팩스번호	031-590-8399	/ kspoint@korea.kr		/ 비공개(5)	

##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 남 양 주 시



수신 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2A경기남양020)

1. 보육정책과-4348(2022.02.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2A경기남양020) 1부. 끝.

남 양 주 시 장



주무관	권필순	팀장	배진위	복지국장	전달 2022. 2. 25. 이민애
협조자					
시행	여섯아동과-5619	(2022. 2. 25.)	접수	보육정책과-4413	(2022. 2. 25.)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급로16번길 95, (다산2동, 남양주시 청 복지국)				/ <a href="http://www.nyj.go.kr">http://www.nyj.go.kr</a>
전화번호	031-590-4491	팩스번호	031-590-2269	/ <a href="mailto:kwonps@korea.kr">kwonps@korea.kr</a>	/ 비공개(5)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남양020			
정책명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보육정책과		
	담당자명	전정인	전화번호	031-590-897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2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육정책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관련 조항, 표현 : 없음 ✓성별특성 반영 : 해당사항 없음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성별 통계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필순/031-590-4491)

보육정책과장 귀하

## 붙임4 부패영향평가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 남 양 주 시



수신 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2-14, 15)

보육정책과-4008(2022.2.22.)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남양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10조 (재평가 절차)에 따라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2부. 끝.

감 사 

주무관	이민섭	청렴윤리팀장	심현아	감사관	진달 2022. 2. 23. 홍준기
협조자					
시행	감사관-2120	(2022. 2. 23.)	접수	보육정책과-4176	(2022. 2. 23.)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감사관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zmxncbv3@korea.kr	/ 비공개(5)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2-남양주-14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이인섭
입 안 부 서	보육정책과	입 안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이기순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2. 2. 23.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p>2022년 2월 23일</p> <p><b>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b></p> <p>(담당자 / 연락처 : 이인섭 / 031-590-4719)</p>			
<p><b>보육정책과장 귀하</b></p>			

## 붙임2 규제심사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회신(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건)

1. 보육정책과-4166(2022. 2. 23.)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및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행정규제(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지자체의 영조물(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이용 또는 재산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사용료는 행정규제 아님

### 관련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심사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예비심사) ①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끝.

# 법 무 당 향 표 영

---

주무관 김경아 남세자보호관 대결 2022. 2. 25. 법무담당관 진급  
장동탄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669 (2022. 2. 25.)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법무담당관 / <https://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12 팩스번호 031-590-2900 / [huijijin74@korea.kr](mailto:huijijin74@korea.kr) / 비공개(5)